공고 제2026-13-53호

2027년도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성 평 등 가 족 부 장 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 사 장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2026. 11.

성평등가족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목 차

1.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2
 가. 응시자격
 나. 결격사유
 다. 자격의 취소

2. 검정과목 및 방법 ····· 4

3. 원서접수 ····· 5
 가. 원서접수 기간
 나. 원서접수 방법
 다. 자격검정 수수료
 라. 수수료 환불

4. 서류제출 및 심사 ····· 6
 가. 서류제출 기간
 나. 제출방법
 다. 제출처
 라. 응시자 제출서류
 마. 서류제출 유의사항
 바. 인정불가 사례

5.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9

6.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 10

부록1. 응시자별 제출서류 ····· 11
부록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와 내용 ····· 18
부록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이수과목의 인정범위 ····· 20
붙임1. 응시원서 ····· 21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 23
붙임3. 경력증명서 ····· 24

※ 주요 안내사항

【 2급 자격검정 일정 】

01	원서접수	02	서류제출 및 심사	03	합격자발표
2. 15.(월) ~ 3. 2.(화)		3. 3.(수) ~ 3. 12.(금)		3. 30.(화) 10:00	

※ 원서접수는 시작일 09:00부터 종료일 18:00까지임

구분	기존 (~'26.12.31.)	개정 ('27.1.1.~)
검정기관	[1~3급]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한국산업인력공단 [2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급 검정과목	**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문화 ·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청소년문제와 보호	**9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문화 ·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추가**
	· 전공과목 이수	· **과목별 이수학점 도입 : (전문)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3급 취득 후 2급 승급자	**3급 → 2급 승급** · 3급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3급 → 2급 승급** · 3급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또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
2급 검정방법		 **서류심사**

1.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구분	응시자격기준
2급 청소년 지도사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3.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필수영역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5.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6.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대학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이수과목 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검정과목 중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것 3)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 응시자격 기준 참고사항 ※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3.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이수과목 이수,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 이수 및 같은 표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는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 대학·전문대학의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과 후의 이수를 모두 포함한다.

나.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25. 4. 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2027. 3. 30.)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검정에 응시하여 합격하여도 "무효" 처리됨(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5항)

다. 자격의 취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2. 검정과목 및 방법

가. 검정과목 및 방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2급 청소년지도사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9.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서류심사

※ 검정과목 참고사항 ※

1.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과 관련된 인정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이수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3학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2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해야 한다.
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의 시간은 1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습기관의 요건, 선정·취소의 기준 및 실습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3. 원서접수(인터넷)

가. 원서접수 기간 : 2027. 2. 15.(월) 09:00 ~ 3. 2.(화) 18:00

나.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단체접수 불가)

※ 청소년지도사 통합관리시스템(https://www.youth.go.kr/yworker)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파일 첨부

※ JPG, JPEG 파일(반명함 사이즈 300 X 4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수정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다. 자격검정 수수료 : 25,000원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 결제하여야 접수 완료

라. 수수료 환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8조)

반환기준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2급 자격 서류심사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서류심사 개시일(2027.3.3.)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되며, 이후 환불 불가

4. 서류제출(등기우편) 및 심사

가. 서류제출 기간 : 2027. 3. 3.(수) ~ 3. 12.(금)

○ **서류심사 개시일 : 2027. 3. 3.(수)**

○ **서류심사 마감일 : 2027. 3. 12.(금)**

※ 경력환산 기준일은 서류심사 마감일로 함(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34조)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서류제출 마감일(2027. 3. 12.)까지 제출처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개별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배송조회를 위하여 필히 영수증 보관 요망

다. 제출처

기관명	주소지	전화번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인력양성부)	(312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자격검정 담당 앞 (지도인력양성부)	041-620-7741~5

※ 제출처 주소지 외 다른 주소지로 도착하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 시 봉투에 '**2027년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서류 재중**' 표기 요함

라.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1. 공통서류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 (사진 포함) 온라인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2.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가. 자격 검정 9과목(현장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대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졸업증명서 원본 1통. (2)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통. (시간제 이수과목 포함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수 증빙서류 제출)

나.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의 사본 1통.(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2006년 ~2012년에 운영된 교육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수한 자>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다.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2)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통. (시간제 이수과목 포함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수 증빙서류 제출)

※ 원본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서류접수 마감일 후 도착하는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음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외국에서의 범죄경력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회보서 등 원본서류를 위의 동일한 절차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복사본, 스캔본 출력물, 이메일 수신 자료 등)은 인정 불가
※ 단, 제출 서류 목록에 '사본' 제출 가능으로 명시된 경우(자격증 등)에 한하여 사본 제출 가능
※ 정부24 또는 발급기관의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된 문서로서, 발급번호 또는 문서확인번호 등을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식 전자문서는 예외적으로 출력물 제출을 인정
※ 행정기관 간 공문 또는 전송된 문서(팩스) 인정
※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는 발급기관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별도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위변조로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을 수 있음
○ 서류접수 마감일 후 도착하는 원본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접수된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자격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심사가 진행됨

바. 인정불가 사례

증빙서류	인정불가 사례내용
응시 원서	▸ 허위내용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서류 등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복사본, 컬러스캔, 이메일 수신 자료 ▸ 학교장 직인 누락 ▸ 주민자치센터 민원서류 - 교육기관(대학)의 발급번호 및 교부자 등 기재 누락 - 교부기관(주민자치센터)의 교부기관명, 교부번호, 담당자, 주민자치센터 직인 날인, 수입인지 누락 ▸ 인터넷발급서류 - 원본 마크 확인 불가 등 ▸ PDF 증명서 - 증명서 하단에 '~PDF출력물은 사본입니다' 있을 경우 사본 처리
경력증명서	▸ 복사본, 컬러스캔, 자필작성 ▸ 발급기관 직인 및 담당자 확인 도장 누락 ▸ 허위내용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적증빙자료)	▸ 인터넷 조회화면 출력물 ▸ 지로용지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5.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기준

❍ **서류심사**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나.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7. 3. 30.(화) 10:00**

❍ **발표방법** : 청소년지도사 통합관리시스템(https://www.youth.go.kr/yworker) 공지

6.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가. 자격연수

1)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연수대상 : 2급 자격검정 합격자

3) 연수접수 : **2027. 3. 31.(수) 10:00**

4) 접수방법 : 회원가입(https://www.youth.go.kr/yworker) → 온라인 신청

5) 문의전화 : 041-620-7721~4(지도인력양성부)

6) 연수과정 수수료 : 81,000원(숙식비 별도)

7) 유의사항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음(자격검정 및 연수 모두 취소됨)

❍ 외국인은 외국에서의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회보서 등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나. 자격증 교부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함(30시간 이상)

2) 자격연수 대상자는 결격사유 조회 필수(청소년기본법 제21조)

※ 자격연수 참가 시, 행정정보공동이용[1] 정보 열람 동의

3)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수료일 기준 익월 온라인 자격증 교부(예시: 5월 수료 → 6월 발급)

1)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나 보유기관에서 제출받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부록 1 응시자별 제출서류

신규응시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1) (편)입학한 학교에서 검정과목 이수 응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졸업증명서 원본
- 성적증명서 원본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것

나.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전문)대학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으로 취득되어야 함

다. 「(편)입학한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과 「시간제등록 등 학점인정대상과목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여 응시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편입학한 학교에서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1조제2항)

(2) 학점은행제로 검정과목 이수 응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졸업증명서 원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원본

※ 서류제출 마감 시각까지 시간제 학점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인정 불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하여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승급자 (3급→2급)

①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온라인 자격정보 연동되며, 제출 생략)
-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것

나.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전문)대학은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으로 취득되어야 함

다. 「(편)입학한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과 「시간제등록 등 학점인정대상과목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여 응시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편입학한 학교에서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1조제2항)

※ 서류제출 마감 시각까지 시간제 학점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인정 불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하여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승급자 (3급→2급)

②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온라인 자격정보 연동되며, 제출 생략)
-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의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유의사항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체이력'으로 출력하고,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전체이력)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www.nhic.or.kr ☎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이력) : total.comwel.or.kr ☎ 1588-0075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 www.nps.or.kr ☎ 1355

나.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2006~2012년에 운영된 교육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수한 자)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40시간 이상) 및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단,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증명서 외 '근로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라. 일용직근로자는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마. 경력환산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까지로 함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온라인 자격정보 연동되며, 제출 생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붙임3 참조)
-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중 택일(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
 - ▶ 법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 법인설립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위 기관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1가지 선택 제출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전문위원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온라인 자격정보 연동되며, 제출 생략)
- 경력증명서 원본(해당부서와 업무내용 명시)
-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기간의 공문서 형식의 업무분장표 사본 (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내일이룸학교))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온라인 자격정보 연동되며, 제출 생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붙임3 참조)
-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중 택일(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
 -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 위탁 운영 시설 : 위탁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 직영 시설 : 지자체 조례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해당자에 한함)

 ※ 지자체 조례는 경력기간과 위탁기간 동일할 것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온라인 자격정보 연동되며, 제출 생략)
- 교사 경력증명서 원본
- 해당 학교장의 단체지도교사 확인서 원본
-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단체지도교사 확인서 원본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아동복지법」 제13조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온라인 자격정보 연동되며, 제출 생략)
- 경력증명서 원본(해당부서와 업무내용 명시)
- 해당 기간의 공문서 형식의 업무분장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온라인 자격정보 연동되며, 제출 생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붙임3 참조)
- 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
-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중 택일(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
 - ▶ 아동복지시설신고증(해당자에 한함)
 - ▶ 위탁계약서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교원, 보호관찰관, 경찰청(서)의 (여성)청소년계(과) 청소년업무 담당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온라인 자격정보 연동되며, 제출 생략)
- 교원자격증 사본(소년원교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붙임3 참조)
-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기간의 공문서 형식의 업무분장표 사본 (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그 외 종사분야 2군 시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학생수련원·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스쿨·Wee센터·Wee 클래스, 청소년 지원시설)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온라인 자격정보 연동되며, 제출 생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붙임3 참조)
- 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
-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중 택일(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
 - ▶ 시설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 시설신고증(해당자에 한함)
 - ▶ 위탁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 직영 시설 : 지자체 조례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필수)(해당자에 한함)

 ※ 지자체 조례는 경력기간과 위탁기간 동일할 것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부록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와 내용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와 내용

종 사 분 야	경력환산 점수 (1월당)	비 고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평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9의2.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 제1호~제9호의2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1점	1점은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1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함
11.「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아동복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의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5.「경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6. 제11호~제15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0.5점	

① 위의 표에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 환산은 반드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에 의거하여 산출

② 청소년 담당부처 지원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2003년 7월이후) 및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2006년 ~2012년에 운영된 교육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수한 자)은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단,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구분	내용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경력 100% 인정)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구분	내용
종사경력 환산절차	1) 자신의 업무가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에 해당되는지 확인 2) 종사분야에 해당될 경우 : 해당되는 종사분야의 경력인정비율 확인 3) 다음의 도식에 의거하여 자신의 인정 경력을 산출 : 종사경력(최종 인정경력) = 근무기간(개월) × 경력인정비율(1.0/0.5)
단시간 근로자 경력 환산 예시	주 40시간, 한달 209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임. 단시간(주35시간) 근로자의 경력 환산 예) 근무경력 : 2025. 5. 1. ~ 2026. 9. 5.(주35시간) 1. 총 근무일수 : 493일 2. 493/7일 = 70.4주 3. 총 근무시간(근무주*주근로시간) = 70.4*35 = 2,464시간 4. 2,464시간/209시간 = 11.78월 (11개월 23일)
중복경력 처리문제	- 동일기간 내의 중복경력(학력포함)이 있을 경우 하나의 경력(학력)만을 선택해야 함
지도자 전문연수 경력 산정	- 연수시간 20시간당 경력 1개월 산정 (총 12개월까지 경력 인정) ※ 2003년 7월 이후 청소년 담당부처 지원에 의한 40시간 이상의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에 한하여 인정
지도사 직무보수교육 경력 산정	- 교육시간 20시간당 경력 1개월 산정 (총 1개월만 경력 인정) ※ 2006 ~ 2012년 까지 청소년담당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직무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부록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이수과목의 인정범위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이수과목의 인정범위(청소년기본법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1조 별표1)

등급	현행 자격검정 과목	과목 인정범위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 검정과목명이나 인정범위 과목명에 "~론", "~학", "~연구", "~과정", "~세미나", "~이론"으로 포함된 경우도 해당 검정과목으로 인정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2】)

구 분	영 역	이수 과목
대학 또는 대학원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전문대학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붙임1】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본 제출)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자격검정기관의 장 귀하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응시등급	[]1급 []2급	
*응시번호			②성별	[]남 []여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③성명	한글		④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자				
⑤주소	자택[]		연락처	자택전화	
	직장[]			직장전화	
				휴대전화	
				e-mail	
⑥현재 직장	명칭	직위	⑦최종학력		
⑧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2급 취득일자		3급 취득일자		
⑨2급 자격 기준 응시 학력	년 월 일	학교	과 []졸업, []학위취득		

⑩청소년육성 업무 경력	종사 기간 (연월일)	종사 시설명·단체명·기관명	종사 분야	종사 개월·일	*환산점수
	소계				

⑪전문연수경력	연수 기간 (연월일)	연수 실시기관	연수 과목	연수 시간	*환산점수
	소계				

⑫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⑬검정과목 이수 확인	검정과목명 (인정과목명)	이수 과목명	이수 구분명	이수학점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또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또는 청소년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담당 직원 확인사항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 사항 중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응시자 참고사항

1. 원서기재요령
 ①응시 등급: 1급 · 2급 중 응시하려는 급수에 √표를 합니다.
 ②성별: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③성명: 한글과 한자로 적습니다.
 ④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주소: 자택 및 직장에 해당되는 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동/층/호(법정동, 공동주택명), 전화번호를 적습니다(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란에 √표를 합니다).
 ⑥현재 직장: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명, 직위를 적습니다.
 ⑦최종학력: 최종학력을 적습니다.
 ⑧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일자(교부 일자)를 적습니다.
 ⑨2급 자격기준 응시 학력: 2급 자격증 응시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력사항을 적습니다
 ⑩청소년육성 업무 경력 및 종사 기간: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적되, 날짜까지 정확히 적습니다(예: 2003. 1. 1. ~ 2004. 1. 15.).
 • 종사 시설명 • 단체명 • 기관명: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시설 • 단체 • 기관 등의 이름을 적습니다.
 • 종사 분야: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분야를 적습니다.
 • 종사 개월 • 일: 종사 기간을 개월과 나머지 날짜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예 : 종사 기간이 2003. 1. 1. ~ 2004. 1. 15.인 경우 12개월 15일로 적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1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일 이후의 경력사항만 적고, 같은 표 제2호의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중 다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일 이후의 경력사항만 적습니다.
 ⑪전문연수 경력: 성평등가족부 지원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과정(2003년 7월 이후)을 수료한 것만 차례대로 적습니다.
 ⑫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 응시자격 부적격자의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⑬검정과목 이수 확인
 • 이수 과목명: 검정과목명을 참고하여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을 적습니다.
 • 이수 구분명: 성적증명서를 참고하여 이수한 과목의 이수 구분명을 적습니다(예: 전공필수, 전공선택, 복수전공 등).
 • 이수학점: 본인이 이수한 과목의 이수학점을 적습니다.
2. 각종 구비 서류: 별도 첨부
3. 접수된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법적근거	보유기간
▪ 성명, 사진, 전화번호(휴대폰, 유선전화), 주소,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취득사항 ▪ 본인이 서류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 (학력 및 검정과목 이수 증빙서류, 경력인정 증빙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각종 제출서류)	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업무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3호,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준영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 위 개인정보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로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2.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항목	제공 목적	법적근거	보유기간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 성명,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유선전화)	결격사유 조회, 자격증발급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3호,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 위 개인정보 제공은 청소년지도사 자격 부여 및 자격관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3】 경력증명서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명	한 글	㊞	주민등록번호	-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 근무형태	부서(직책)	담당업무
	예시) 2023년 6월 1일~ 2024년 5월 31일 (1년 개월 일)	계약직 (풀타임)	활동사업부	취약계층청소년 활동사업 운영
	예시) 2025년 1월 1일~ 2026년 7월 31일 (1년 7개월 일)	정규직 (상근)	활동사업부 (부장)	활동사업부 업무 총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 부서 및 업무변경시 모두 기재할 것

용도	청 소 년 지 도 사 자 격 검 정 제 출 용			
발급처	발 급 부 서		책 임 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 근무형태 : 정규직(상근,비상근)/ 계약직(풀타임,파트타임)/ 일용직(풀타임,파트타임)/ 외부업체직원/ 파견/ 기타 중 하나로 표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기관) ○○○○○장 인

※ 유의사항

1. 증명서 발급기관 직인과 담당자 확인(도장)이 누락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기재 내용이 과장, 허위로 확인된 경우 향후 해당 단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시한 서식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구성 내용은 반드시 기재 요망